
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

□ 관련근거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 센터 운영 조례」 제27조

□ 추천의뢰: 마포구청 구민안전과

□ 추천대상: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

- ※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중 추천

□ 위원회 구성 및 임기

-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15명 이내 구성
- 임기 2년

□ 위원회 기능

-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
- 설치·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
-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등 심의

□ 추천위원(안)

- 오 옥 자 의원
- 장 정 희 의원